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과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이 선 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성립 유도, 재판 및 추심 등 지원

1994년 사법제도 시찰을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뮌헨법원 판사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 판사에게 “이혼이 많은 데 비해 청소년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더니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국가·사회적으로 아이들만 잘 크면 된다는 공감대(共感帶)가 형성되어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생활비·학비는 물론이고, 주거문제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은 비교가 되어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독일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무려 30년, 40년 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양육비 이행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록 20년 이상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이혼 가정의 양육비 이행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이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성을 들여 2014년 3월 24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마침내 금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47만 가구나 된다. 그 중 단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받아 본 적이 있는 경우는 불과 17%에 불과하고, 83%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과 굶어 죽지 않으려고 생업에 매달리느라 양육비를 청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렇게 한부모로서辛酸(辛酸)하게 살면서도 자녀를 입양 보내거나 보육원 같은 시설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출범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문제에 관해 ‘상담’을 하고, ‘협의 성립’을 유도하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추심’을 지원하는 등 (양육부모와 자녀, 그리고 비양육부모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자녀 양육은 사회 책임, ‘가난 대물림’ 고리 끊어야!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이들 양육은 어디까지나 그 아이를 낳은 부모 개인(個人)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아이들이 부모를 골라 태어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에서 단지 한부모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크나 큰 문제다.



“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서울관할 사건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나, 정작 80%에 가까운 지방관할 사건은 부득이하게 법률구조공단 등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독립해 전자소송(電子訴訟)을 할 수 있고, 전국적인 지원이 설치되어야만 명실상부하게 차세대를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모사랑은 햇볕과 같은데, 한부모가 생존에 허덕이느라 충분히 보살피지 못 하여 그 자녀가 교육, 취업, 결혼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가난을 대물림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국가·사회적으로 지혜(智慧)를 모으고 정성(精誠)을 기울여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혜(施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실천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남북통일(南北統一)’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지 않는가? 우선 남쪽에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어려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통일(統一)이 되면 북쪽에 살고 있는 차세대들까지 모두 포용(包容)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야 진정으로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전국적 지부 설치로 더 많은 지원 필요해!

그런 점에서 현재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은 좀 더 발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청구’만을 규정해 놓았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별거가정의 부양료 청구’까지로 지원대상을 넓혀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집행권원이 없으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同意)를 얻지 않는 한,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조차 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제1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규정을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기가 참으로 난감(難堪)한 실정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역시 마찬가지다.

세 번째로 세금환급금 압류 및 이체를 규정한 법률 제20조에서 “국세청장은 … 압류한다”는 조문만 가지고는 그 압류의 주체(主體)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와 법률 제21조의 “채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충돌되는 문제 또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밖에도 전자소송(電子訴訟)과 전국(全國)적인 지부(支部)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서울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서울 관할 사건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나, 정작 80%에 가까운 지방 관할 사건은 부득이하게 법률구조공단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하여 전자소송(電子訴訟)을 할 수 있고, 전국적인 지부가 설치되어야만 명실상부하게 우리 차세대를 위한 중추적(中樞的)인 기관(機關)이 되어 “양육비 이행을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